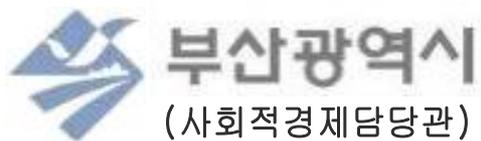


2022년 제2차 [예비]사회적기업
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



[요 약]

'22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

□ 추진근거
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8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
-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등

□ 공모개요

- 공모사업 : 일자리창출사업(신규, 재심사, 재참여)
※ '21년 추진실적 : 일자리창출 사업 101개사 445명 배정 승인
- 공고기간 : '22. 7. 1.(금) ~ 7. 29.(금)
- 신청접수 : '22. 7. 8.(금) ~ 7. 29.(금) 18:00 까지 *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신청

□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- 지원인원 :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
-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+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*
* 2022년 기준단가(월 209시간/1일 8시간 근무시) 2,107,260원

□ 공모절차



□ 추진일정

- 사업설명회 개최 : '22. 7. 4.(월) ▶ 신청기업, 구·군, 고용청 등
- 서류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: '22. 8. 1.(월) ~ 8. 22.(월)
- 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: '22. 9. 15.(목) ~ 9. 16.(금)
- 결과통보 : '22. 9. 23.(금) ▶ 부산시 홈페이지, 구·군

2022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

사회적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2년 제2차 (예비)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임.

I 추진근거 및 실적

1 추진근거
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8조(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)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(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
-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
- 「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

2 추진실적(2022년 상반기)

□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-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(1차) : 55개사 261명 배정 승인

구 분	신청기업			선정기업		
	계	신규	재심사	계	신규	재심사
합 계	61개사 (356명)	26개사 (125명)	35개사 (231명)	55개사 (261명)	20개사 (61명)	35개사 (200명)
1차공모	61개사 (356명)	26개사 (125명)	35개사 (231명)	55개사 (261명)	20개사 (61명)	35개사 (200명)

※ '21년 추진실적 : 101개사 445명 배정 승인

II

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

1

추진목적

-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-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조성

2

공모개요

- 공모사업 : 일자리창출사업(신규, 재심사, 재참여)
- 공고기간 : '22. 7. 1.(금) ~ 7. 29.(금)
- 신청접수 : '22. 7. 8.(금) ~ 7. 29.(금) 18:00까지*
*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신청
- 전문가심사 : '22. 9. 15.(목) ~ 9. 16.(금)
- 결과통보 : '22. 9. 23.(수) ▶ 부산시 홈페이지, 구·군

□ 공모절차



□ 참여자격

- (신 규) 유급근로자(자체고용)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
 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 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 - *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전(2022년 3월 31일까지) 관련법 또는 지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함
- (재심사)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
- (재참여)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서
 -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
 - * 일자리 유지여부 판단(구·군) : 재정지원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수 (기존근로자+참여근로자)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(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 아님)
 - 사회적가치 지표를 통한 사회적가치 수준이 '탁월 또는 우수'한 기업

□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- 지원인원 :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
-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+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(10.073%)*
 - * 2022년 기준단가(월 209시간/1일 8시간 근무시) 2,107,260원
- 지급수준 : 예비·인증별 지원 비율 차등 적용
 - 예비사회적기업 1~2년차 각 50% (취약계층 +20%)
 - 사회적기업 1~3년차 각 40% (취약계층 +20%)

□ 주요 심사내용

- 사회적가치, 고용성과,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, 기업혁신, 자율경영공시여부 등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
 - * 일부 항목 사회적가치지표(SVI) 활용 심사
-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을 배정 * 심사위원회의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
 - ※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

Ⅲ 세부 추진계획

1 사업설명회

□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설명회

- 일시/장소 : '22. 7. 4.(월) 14:00~16:00 / 시청 1층 대강당
- 참석대상 : 일자리창출사업 신규, 재심사 대상 기업(50여명)
- 주요내용 : 참여자격, 구비서류, 지원 내용 안내 및 교육 등
- 강 사 : 박은정 팀장[(사)사회적기업연구원]

□ 구·군 등 담당자 교육

- 일시/장소 : '22. 7. 4.(월) 16:00~18:00 / 시청 1층 대강당
- 참석대상 : 구·군,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업무담당자 등(20여명)
- 주요내용 : 일정 안내, 현지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등
- 강 사 : 배현범 팀장, 박은정 팀장[(사)사회적기업연구원]

2 사전 실무검토 등

□ 신청서 검토 등 ▶ 구군, 고용청, 지원기관

- 기 간 : '22. 8. 1.(월) ~ 8. 22.(월)
- 주요내용
 - (신청서검토)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검토 * 필요시 자료보완 요구
 - (현장실사) 특이사항 및 필요시 구·군 담당자 현장실사
 - (검토보고)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보고

□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및 심사 자료 작성 ▶ 부산시

- 기 간 : '22. 8. 8.(월) ~ 9. 2.(금)
- 주요내용
 - (신청서검토) 구·군 검토의견서 토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
 - (SVI측정) 권역별지원기관 신청 기업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용역
 - (자료작성) 전문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작성

3

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

- 일 시 : '22. 9. 15.(목) ~ 9. 16.(금)
- 장 소 : 부산시청 26층 회의실 또는 12층 소회의실
- 심사위원 : 7명(위원장 : 위원회에서 호선)
- 주요내용 : 기업 브리핑, 심사자료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
[심사위원회 구성요건(고용부 지침)]

- ❖ 각계 전문가(민간전문가, 경영계, 사회적기업가 등) 7인 내외로 구성하되,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인을 포함

4

선정 결과 알림

- 통보일자 : '22. 9. 23.(금)
 - 행정사항
 - 부산시 홈페이지 결과 공고 및 구·군 공문 발송
 - 일자리 미승인 기업 결과 안내(미승인 사유 구·군 담당자 개별 통보)
 - 탈락기업 대상 상담회* 안내 및 홍보
- *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(지역별 중간 지원기관)

IV

향후 추진 일정

- 공모일정 통보 및 홍보 요청(구·군, 유관기관 등) : '22. 6. 29.
- 보도자료 배포 : '22. 6. 29.
- 공고문 공고 : '22. 7. 1.
- 사업설명회 개최 : '22. 7. 4.
- 서류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: '22. 8. 1. ~ 8. 22.
- 심사자료 제작 : '22. 8. 23. ~ 9. 2.
- 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: '22. 9. 15. ~ 9. 16.
- 선정 결과 통보(부산시 홈페이지, 구·군) : '22. 9. 23.